

(사)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임원선거 규정

(사)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임원선거 규정

2021. 11. 16. 개정

2025. 11. 04. 일부개정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의 회장 및 임원선거가 회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의 회장 및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 2 절 선거관리 일반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제1항의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전 7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 ①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당해연도 부지회장 1인, 이사회 추천 2인으로 총 3인으로 구성하고, 당해연도 사무국장 1인이 사무관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각 후보 측에서 참관인 1인씩을 추천하여 위원회와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협의한다.
- ②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③위원장은 선거일공고일에 위원명단을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025.11.04. 일부개정]**
- ④제1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자체 없이 이사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회원

2. 대표자 및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

⑥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본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

2.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 5 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 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 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 사무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③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사무국의 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7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8 조 (선거권이 없는 회원) 선거일 현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공고일 이후에 본회에서 탈퇴한 회원
2. 본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일공고일 현재 징계 중인 회원
3. 선거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회원으로 등재된 회원
4. 선거일 당해연도 10일 이전까지 회비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

제 9 조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2. 선거일 현재 회원(조합원)명부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 4 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10 조 (선거기간) 본회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선거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025.11.04. 일부개정]

제 11 조 (선거일)

- ① 임원선거의 선거일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1.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2025.11.04. 일부개정]
 2.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②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거인명부

제 12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회원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별지 제2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5.11.04. 일부개정]

제 13 조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 ①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에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대표자는 선거일공고일 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선거권자가 있는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명단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9일 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제 6 절 후보자

제 15 조 (후보자 등록)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2일의 입후보 등록 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5.11.04. 일부개정]
 1.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추천장(별지 제4호서식) 1부** [2025.11.04. 일부개정]
 3. 공탁금 200만원(등록 심사 완료 후)
- ② 제1항, 제3호의 추천은 선거권자 5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 하되 심사 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 ④ 입후보 등록 시 선거 공탁금 2,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탁금은 선거 관리 위원회 내 규에 따라 선거관리비(회의비 등 선거관리 비용)와 홍보물 인쇄 및 우편 통신비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와 선거 사무에 사용하고 잔액 발생 시에는 본 지회 사무처 운영비로 편입한다.

제 16 조 (등록무효)

- 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별지 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기납부한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2025.11.04. 일부개정]

제 18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별지 제5호,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제 7 절 선거운동

제 19 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20 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후보자의 동록이 끝난 때란 후보자 서류검토 후 공탁금 입금 및 참관인 등록까지 마친 후를 말한다.**)
[2025.11.04. 일부개정]
-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21 조 (선거운동원)

- ①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5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제 22 조 (선전벽보)

-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기간 중 선전 벽보를 제작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 및 활용할 수 있다. [2025.11.04. 일부개정]

제 23 조 (합동토론회 등)

- ① 후보자는 정견 발표 및 개인 연설.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정견 발표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총회에서** 진행한다. **[2025.11.04. 일부개정]**
- ③ 개인 연설.대담은 휴게실.식당 등 선거권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E-mail 송부, **카카오톡**,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25.11.04. 일부개정]**

제 26 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 ① 후보자.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협박.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8 절 투 표

제 27 조 (투표방법)

- ①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직접 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 28 조 (투표소 설치)

-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투표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늦어도 선거일 전 3일까지 각 투표소마다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투표관리위원회위원은 3인 내지 5인으로 위원회가 회원 중에서 선정.위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및 위원장의 선출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약간 명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9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별지 제13호서식)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위원장 직인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후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 한다. 이때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2025.11.03. 일부개정]

제 30조 (투표시간) 위원회는 선거일 전 3일까지 투표 시간을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조 (투표)

- ①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 ③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함하도록 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투표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2조 (투표 참관)

- ①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별지 제9호서식)하여야 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 33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 ① 투표자. 위원회위원.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 9 절 개 표

제 34 조 (개 표)

-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3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 ③ 개표는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위원장은 투표소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의 대조 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 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5 조 (개표참관)

- ① 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일 전 일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투표참관인과 함께 위원회에 신고(별지 제11호서식)하여야 한다.
-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 및 회원은 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 36 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 ① 위원회 위원.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위원회 위원.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은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 37 조 (무효투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당해 위원회가 제공한 기표 용구를 사용 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자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 명확한 것.
 6.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 명확한 것.
-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38 조 (선거의 정리)

- ①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표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선거록.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절 당 선 인

제 39 조 (당선인의 결정)

- ① 당선인 결정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 득표자들로 결선투표 한다.
- ②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에 의견을 물어 정하도록 한다. 또한,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도 같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별지 제13호서식)하고 그 당선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0 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당선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1 조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 42 조 (재선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 43 조 (보궐선거)

- ① 대표자는 선출된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2 절 이의신청. 기타

제 44 조 (이의신청)

-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부터 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심의. 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5 조 (규정위반처리)

- ①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 선거권자, 비회원 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이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 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2. 후보자 등록 무효
 3. 당선무효
- ② 위원회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절 보 칙

제 46 조 (선거관리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11.16.)

1.(시행일) 본 규정은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1.04.)

1.(시행일) 본 규정은 본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 선덕 (인)

선거관리위원: 최승완 (인)

선거관리위원: 최석원 (인)